

## 건축허가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7항 규정에 따라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건에 대해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기타)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26. 7. 7.

파 주 시



- 공고명칭 : 건축허가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 처분근거 : 「건축법」 제11조제7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 처분내용 : 건축허가 취소 처분
- 처분대상

허가번호	건축주	대지위치	용도	건축(연)면적
2024-주택과- 신축허가-10	김O용	야당동 64-3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113.27㎡ (316.88㎡)
2024-주택과- 신축허가-11				209.57㎡ (541.88㎡)

- 공고기간 : 2026. 7. 7. ~ 2026. 8. 5.
- 게시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문의사항 : 파주시 주택과[☎031-940-4773]
- 유의사항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기관의 장(파주시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